

고시 제 호

홍수관리구역의 지정(또는 변경·폐지) 고시

「하천법」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또는 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)를 ○○○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하천명칭	하천등급	홍수관리구역의 구간			면적(㎡)	지정(변경·폐지)일, 사유
		기점	종점	거리(km)		

첨부서류

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